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고정1097 판결 모욕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정1097 모욕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종혁(국선)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라는 단체의 회원이고, 위 단체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 'E'에 대해 동물 학대 및 후원금 횡령 등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21. 13:18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카페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대표 B가 작성한 "푸들의 살 가죽을 벗기는 E의 잔인한 자작극을 고 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더한 짓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상 이상의 일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루빨리 끝나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울분하고 발동동 구르길 바라고.. 그보다 더 한 방법 동원할 까 두렵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6:3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경악을 금치 못할 사체유기"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개무덤.. 개지옥. 차마 동영상 못 봤습니다. 뻔한 비참한 억울한 끔찍한 모습일텐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 불쌍한 푸들 책임도 제대로못 질거면서 언제까지 어러구 있을 건지 통탄스럽습니다. 이 거지같은 세상"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4.12.16: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I"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까도까도 끝없는 썩은 양파"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2. 19:0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I가 검소하다구요?"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그래서 그렇게 악다구니 도끼눈에 욕지거리에 다 파헤쳐서 돈 갈취해 버린돈 다 회수해야 합니다. 몇십년 해먹은거 찾아낼 수만 있다면 작은 빌딩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 만일까 요. 다 탈탈 털어야 합니다. 탈탈 사돈에 팔촌까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3, 07:5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 의"I가 검소하다구요?"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기운은 장사요? 따귀 머리 끄댕이 잡힐 수도 있고 사때질 고소미는 기본이요더 분에 못 이기면 직장 찾아가 복 수하는 센쑤까정 악다구니 높은 목청에 기선을 제압하고 쌍욕지거리는덤 기막혀서 방 어도 못하는 사이에 마무리는 112경찰차로 112경찰차 출동 건수 포천 1위 될지 싶은 데요. 고소미도? 것도 1위 일지 싶어요. 상처, 우울, 기막힘 억울함 분노 원망 저주 많은 사람들이 도돌이표되고 있었다는? 포천 J에서 몇십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는 아주 기막히고 슬픈 전설이. 2017년 4월 까지도.아니 대대손손 대물림까지도 일어날 수있다는.. 슬픈 전설이 J 언덕은 저주받은 악마의 언덕입니다. 말못하는 약한 약자 그 애처로운 눈동자들"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1. 09: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K동물보호소는 개고기를 어떻게 거래하는가 -1편-"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육견 업자에게 넙쭉넙쭉 돈 봉투 받아 처먹는 저 악마 저 사악한 손 사진에 버젖이 저렇게 찍혀 있는데도 아니라고 발악을 하니 동봉투 여기저기 받다받 다 육견업자가 찔러주는 돈 봉투에 개 삶아서 개솥로 팔아 주머니 채워서 일백삼십칠만원씩이나 하는 명품 브라 우스 명품구두 명품자켓 이동갈비 온천목욕 택시 대절 그만해라. 대갈통 삐값이 98000원 그 대갈통은 공주대갈통이더냐 강쥐 열 마리 개소주함녀 대갈통 삔값 나오겠구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6. 1. 14: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K동물보호소는 개고기를 어떻게 거래하는가 -1편-"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수십 억에 한 표"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6. 1. 14:5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K동물보호소는 개고기를 어떻게 거래하는가 -1편-"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2005,2006,2007 ~ 2017년 자재 외상 값만해도 매달 몇 백... 그것만 조사해 봐도 집 하채 지어요. 자재값 외상구걸 그거만 뒷조사해도 어마 어마할 겁니다. 스라브지붕에 쇠기둥박은 하꼬방만 못한 집들 시공수리가? 눈먼 돈 투성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 도143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육견업자에게 넙쭉넙쭉 돈 봉투 받아 처먹는 저 악마 저 사악한 손"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피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현재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댓글을 달게 된 동기나 경위를 살펴보면 원 게시글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운영형태를 알리는 취지에서 작성되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댓글을 단 원 게시글을 작성한 B에 대하여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우